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079
----------	------

제출년월일 : 2005. 2.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의 근거법규인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중 제18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내지 21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8조 내지 21조 (삭제)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